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3151호

제출년월일 2023. 1. 제 출 자 축수산과장

1. 제안이유

- 인구 50만 대도시 적용으로 경기도 지방어항 업무 이관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
- 어항의 기능 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 관리 측면을 강화하고 어항발전에 기여한 기업, 단체, 개인에 대한 포상기준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어항의 기능 유지 및 어항 관리 조문 단서 조항 추가(안 제10조제2항)
- 나. 포상 기준 신설(안 제39항)
- 다. 그 밖에 "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"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2. 12. 20. ~ 2023. 1. 9.(20일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2) 부서협의결과
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- 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- 가) 중앙부처 :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
 - 나) 경 기 도 : 해양수산과

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어촌·어항법」제36조의 규정"을 "「어촌·어항법」 제36조" 로, "세부사항"을 "사항"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의는"을 "뜻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제2조의 규정"을 "제2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법 제38조제4항의 규정"을 "법 제38조제4항"으로, "공공단체중 당해"를 "공공단체 중 해당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"법 제38조의 규정"을 "법 제38조"로, "법 제26조의 규정"을 "법 제26조"로 한다.

제3조 중 "법 제35조의 규정"을 "법 제35조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"를 "법 제19조에 따른 해당"으로, "의한"을 "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5호의 규정"을 "제5호"로 한다.

제5조 중 ""이용자단체등"은 법 제38조의 규정"을 "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"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[별지 제1호서식]"을 "별지 제1호서식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"을 "제1항"으로, "[별지 제2호서식]"을 "별지 제2호서식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·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"를 "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"를 "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어항의 기능 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 측면의 경미한 유지·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""이용자단체등""을 "이용자단체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"이용자단체등"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"을 "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"이용자단체등"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"을 "이용자단체등은 법 제40조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제 38조제1항의 규정"을 "제38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"을 "제10조제2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제 16조의 규정"을 "제16조"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제17조의 규정"을 "제17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영 제39조의 규정"을 "영 제39조"로,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항의 규정"을 "제2항"으로, "[별지 제3호서식]"을 "별지 제3호서식"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"이용자단체등"은 당해"를 "이용자단체등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"을 "제1항"으로 하며, "그 내용을 당 해"를 "그 내용을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법 제45조의 규정"을 "법 제45조"로, "[별지 제4호서식]"을 "별지 제4호서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"을 "제1항"으로, "법 제46조의 규정"을 "법 제46조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[별지 제5호서식]"을 "별지 제5호서식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법 제45조의 규정"을 "법 제45조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"을 "제13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제17조의 규정"을 "제17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"을 "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"이용자단체등"은 제1항의 규정"을 "이용자단체등은 제1항"으로, "관리· 사용상황"을 "관리· 사용상황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의 규정"을 "제1항"으로 한다.

제16조 전단 중 ""이용자단체등"과 협의하여"를 "이용자단체등과 협의하여"로, ""이용자단체등"과 공동"을 "이용자단체등과 공동"으로 한다. 제17조제1항 중 ""이용자단체등""을 "이용자단체등"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법 제18조제1항의 규정"을 "법 제18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의 규정"을 "제1항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"이용자단체등""을 각각 "이용자단체등"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1항) 중 ""이용자단체등""을 "이용자단체등"으로 한다.

제22조 중 "법 제38조제1항의 규정"을 "법 제38조제1항"으로, "[별지 제7호서식]"을 "별지 제7호서식"으로, "영 제35조의 규정"을 "영 제35조"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"법 제2조제5호 라목"을 "법 제2조제5호라목"으로,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법 제2조제3호 가목"을 "법 제2조제3호가목"으로, "제15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5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24조 중 "단서의 규정"을 "단서"로, "[별표 1]"을 "별표 1"로 한다. 제25조제1항 중 "법 제38조제1항의 규정"을 "법 제38조제1항"으로, "[별지 제8호] 및 [제9호서식]"을 "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법 제38조제1항의 규정"을 "법 제38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본문 중 "법 제42조제1항의 규정"을 "법 제42조제1항"으로, "점용료 (이하"를 "점용료(이하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법 제2조제5호가목"으로, "제11조의 규정"을 "제11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제1항의 규정에 따른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, "제3조제1항의 규정"을 "제3조제1항"으로,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법 제2조제5호 나목"을 "법 제2조제5호나목"으로, "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17조의 규정"을 "「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0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4조의 규정"을 "제24조"로, "[별표 2]"를 "별표 2"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"법 제38조제1항의 규정"을 "법 제38조제1항"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"을 "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2 호 중 "제28조제3항의 규정"을 "제28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"법 제42조의 규정"을 "법 제42조"로 한다.

제30조제2호 중 "법 제41조제1항의 규정"을 "법 제41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"법 제43조제1항의 규정"을 "법 제43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"을 "「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장:"을 "장: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부위원장:"을 "부위원장: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원:"을 "원:"으로 하며, 같은 조제2항 중 "1인"을 "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의 규정"을 "제1항"으로 한다.

제36조 본문 중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. 제37조 중 "이용자단체 등"을 "이용자단체등"으로 한다.

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9조(포상) 시장은 어항발전에 기여한 기업, 단체, 개인에 대하여 「김포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	논관 실·과·소	축수산과
.,	실·과·소장 성 명	축수산과장 최 근 식
입 안 자	팀 장 직위·성명	해양수산팀장 박 문 우
,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해양수산주사보 안영준(☎4307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연 앵	게 성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어촌·어항</u>	제1조(목적) <u>「어촌·어항</u>
법」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가	법」 제36조
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	
시설 점·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	
여 「어촌·어항법」에서 위임한 사	
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<u>세부사항</u> 을	사항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	제2조(용어의 정의)
하는 용어의 <u>정의는</u> 다음과 같다.	<u>뜻은</u>
1. "어항시설 "이라 함은 「어촌·	1
어항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	
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(이	
하 " 영" 이라 한다) <u>제2조의 규정</u>	제2조
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.	
2. ~ 3. (생 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이용단체 "라 함은 <u>법 제38조</u>	4 법 제38조
<u>제4항의 규정</u> 에 따라 어항시설을	제4항
사용하는 <u>공공단체중 당해</u> 어항시	<u>공공단체 중 해당</u>
설을 직접 이용·수익하는 관할	
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(이하	
"수산업협동조합장"이라 한다)	
과 관할 어촌계장(이하 "어촌계장	
"이라 한다)을 말한다.	
5. "이용자"라 함은 <u>법 제38조의</u>	5 <u>법 제38조</u>
<u>규정</u> 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·사용	

하는 사람과 <u>법 제26조의 규정</u>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 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 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의 범위) 이 조례는 <u>법 제35</u> 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, 어항시설 점·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어항관리청의 의무) ①시장은 관할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<u>법 제19</u> 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어항의 개발 계획에 <u>의한</u>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 도록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시장은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도록 제2 조제4호 또는 <u>제5호의 규정</u>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(이하 "이용자단 체등" 이라 한다)를 지도·감독하 여야 한다.

제5조(이용자단체등의 의무) <u>"이용자</u> 단체등"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점·사용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어항시설 점·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

<u>법 제26조</u>		
 제3조(적용의 범위) 조		
 제4조(어항관리청의 의무) ① <u>조에 따른 해당</u> <u>따른</u>	<u>법</u> 	제19
<u>제5호</u>		
제5조(이용자단체등의 의무) <u>체등은 법 제38조</u>		

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) ①시 장은 어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[별지 제1호서식]의 어항안 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어항시설의 안전점검) ① (생략)

②<u>제1항의 규정</u>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<u>[별지 제2호서식]</u>의 어 항시설 점검부에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·보수 등)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·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·변형 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 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 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·변형 원인

제7조(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) ①
별지 제1호서식
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어항시설의 안전점검) ① (현행
과 같음)
②제1항
별지 제2호서식
<u>E 110-44 1</u>
제10조(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 · 보수
등) ① <u>제8조에 따른 안전점</u>
<u>검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<u>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</u>

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〈단서 신설〉

- 1. "이용자단체등"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 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,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
 - 2. (생략)
- ③ "이용자단체등"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·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1조(유지·관리비용의 부담) ①
 "이용자단체등"은 법 제40조제2
 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
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
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26조제4항 및 <u>제38조제1항</u> 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 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

<u>다만, 어항의 기능 유지</u>
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
항관리 측면의 경미한 유지·보수는
시장이 직접 시행한다.
1. <u>이용자단체등</u>
 2. (현행과 같음)
3 <u>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</u>
항제1호
제11조(유지·관리비용의 부담) ① <u>이</u>
용자단체등은 법 제40조제2항
1 제38조제1항

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

- 2. <u>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</u>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
- 3. <u>제16조의 규정</u>에 따른 어항 청소 에 소요되는 비용
- 4. <u>제17조의 규정</u>에 따른 폐유수거 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
- ②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<u>영 제3</u> 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 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③시장은 <u>제2항의 규정</u>에 따라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·집행액, 당해 연도 예산액 등을 [별지 제3호서식]의 어항별 사 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 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 (국가어항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 산청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어항시설의 피해보고) ① "이 저용자단체등"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

2. <u>제10조제2항제1호</u>
3. <u>제16조</u>
4. <u>제17조</u>
②
<u>9</u> Z
<u>해당</u>
③ <u>제2항</u>
<u>별지 제3호서식</u>
∥13조(어항시설의 피해보고) ① <u>이용</u>
<u> 자단체등은</u>

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②----- 제1항-----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 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 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계통보고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어항의 지정권 그 내용을-----자(국가어항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 수산청장을 말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하다. 제14조(금지행위의 예방) ①시장은 법 제14조(금지행위의 예방) ①-----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[별지 제4호서식]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 제4호서식-----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.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 ②----- 제1항-----를 받은 사람이 원상회복 이행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15조(관리사용 상황의 조사) ①시장 제15조(관리사용 상황의 조사) ①----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어항시설 관리·사용상황을 분 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 과를 [별지 제5호서식]의 어항시설 ---- 별지 제5호<u>서식</u>-----관리부에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 1. <u>법 제45조의 규정</u>에 따른 금지행 1. 법 제45조-----

- 위 발생상황
- 2. <u>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</u>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(손괴)상황
- 3. <u>제17조의 규정</u>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·처리 상황
- 4. (생략)
-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 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및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"이용자단체등"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· 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 시설 관리·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 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 설관리부 사본을 다음 연도 1월말까 지 지정권자(국가어항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)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
- 제16조(환경보호 활동) 시장은 관할 어 저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

2. 제13조
3. <u>제17조</u>
4. (현행과 같음)
② <u>제1항</u>
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
<u>관리·사용상황</u>
④ <u>제1항</u>
 16조(환경보호 활동)

"이용자단체등"과 협의하여 어항 청소계획을 수립하고, "이용자단체등"과 공동으로 어항 안에 유입된부유물,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어항 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,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권자(국가어항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
제17조(폐유수거용기의 비치) ① "이 저용자단체등" 은 어항 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 정용량의 용기(이하 "폐유수거용기"라 한다)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,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·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 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"폐유수 거용"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9조(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저 등) ①시장은 관할 어항이 <u>법 제18조</u>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

	이용자단체등과 협의하여	<u> </u>
		<u>이용자단체</u>
	<u>등과 공동</u>	
쉐	17조(폐유수거용기의 비	치) ① <u>이용</u>
	<u> 자단체등</u>	
	② <u>제1항에 따른</u>	
쉐	19조(어촌관광을 위한 -	구역의 관리
	등) ①	법 제18
	조제1항	

한 구역(이하 "어촌관광구역"이라 한다)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 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 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 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 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 략)

제20조(어혼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)
① "이용자단체등" 이 어혼관광구역 안에 어혼관광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하며,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.

- ② "이용자단체등" 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,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③ <u>"이용자단체등"</u>은 어촌관광시 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

② <u>제1항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)
① <u>이용자단체등</u>
,
② <u>이용자단체등</u>
③ <u>이용자단체등</u>

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제21조(어촌관광구역의 점검) ①시장 은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 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· 운영되고, "이용자단체등"이 설치 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 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어항시설의 점·사용 허가 검토 등) 시장은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·사용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[별지 제7호서식]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,영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.

제23조(점·사용허가 면적의 제한) ① 법 제2조제5호 라목의 어항시설용부지를 점·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·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.

-	
-	
-	
	 21조(어촌관광구역의 점검)
-	
-	
-	<u>이용자단체등</u>
_	
-	
제2	22조(어항시설의 점·사용 허가 검
-	토 등) <u>법 제38조제1항</u>
-	별지 제7호서식
_	<u> </u>
-	영 제35조
-	
- 기	 23조(점·사용허가 면적의 제한) ①
	법 제2조제5호라목
-	
-	
-	
_	범위
	<u> </u>

-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.
- 제24조(어항시설 점·사용 신고대상) 법 제38조제1항 <u>단서의 규정</u>에 따른 어항시설 점·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[별표 1]과 같다.
- 제25조(점·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) ①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·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·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[별지 제8호] 및 [제9호서식]의 어항시설사용 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·사용 허가한 경우(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·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)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(국가어항의 경우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6조(점·사용료의 산정) ①시장이 어항시설 점·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

② <u>법 제2조제3호가목</u>
제15조에 따른
제24조(어항시설 점·사용 신고대상) <u>단서</u>
<u>별표 1</u> 제25조(점·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) ① <u>법 제38조제1항</u>
<u>별지 제8호</u> 및 제9호 서식
 ② <u>법 제38조제1항</u>
· 제26조(점·사용료의 산정) ① 법 제42조제1항

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(이하 "사용료"라 한다)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. 다만, 법제2조제5호 가목 (3)의 수역시설에대한 사용료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및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의 규정에따른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 액의 산정은 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(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)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「국유재산법시행규칙」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.

③<u>제24조의 규정</u>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 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

<u>점용료(이하</u>
<u>법</u>
제2조제5호가목
<u>제11조</u>
② <u>제1항</u>
<u>제3조제1항</u>
<u>해당</u>
<u>법 제2조</u>
제5호나목
<u>「김포시 공유재산 관</u>
리 조례」 제30조
③ <u>제24조</u>

정기준은 [별표 2]와 같다. ----- 별표 2----. 제27조(사용료 납입고지 등) ①시장은 제27조(사용료 납입고지 등) ①-----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법 제38조제1항-----시설 점 · 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 리와 동시에 제26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· 결정하고, 지 체 없이 당해 어항시설 점 · 사용자 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 로 고지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 ②제1항-----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, 초일을 산입한다.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 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최근 1년 이 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 2. 제28조제3항-----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 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 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 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 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(생 략) ④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사용료의 납부) ①어항시설 점 제28조(사용료의 납부) ①-----

·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 략)

- 제30조(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) 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 야 하다.
 - 1. (생략)
 - 2. <u>법 제41조제1항의 규정</u>에 따라 점 ·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·사 용이 정지된 경우
 - 3. (생략)
- 제31조(변상금의 징수) ①시장이 <u>법 제</u> 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.
- 제32조(협의회의 구성 등) ①시장은 법 제37조제1항, 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어항관리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 - 1. 위 원 장 : 어항관리부서의 장

	법 제42조
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	30조(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)
	1 (원의 - 기수)
	1. (현행과 같음)
	2. 법 제41조제1항
	3. (현행과 같음)
제	31조(변상금의 징수) ① <u>법 제</u>
	<u>43조제1항</u>
제	32조(협의회의 구성 등) ①
	칙」 제19조제1항 및 제2항
	1 장:
	<u> </u>

- 2. 부위원장 : 수산업협동조합장
- 3. 위 <u>원</u>: 관내 어촌계장(2인이내), 수산업협동조합 어항 담당상무, 어 민대표(2인이내) 등
- ②협의회에는 회의 준비, 회의록의 작성 등 회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<u>1인</u>을 둘 수 있다.
- ③시장은 <u>제1항의 규정</u>에 따라 협의 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 및 관 할 구역내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 지,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36조(수당)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37조(보고 및 자료의 제출) 시장은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3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2. <u>부위원장:</u>
3 <u>원:</u>
②
<u>1명</u>
<u>.</u>
③ <u>제1항</u>
제36조(수당)
<u>범위</u>
<u>〈단서 삭제〉</u>
제37조(보고 및 자료의 제출)
<u>이용자단체등</u>
 .
제39조(포상) 시장은 어항발전에 기여
한 기업, 단체, 개인에 대하여 「김
포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
있다.

참고 1

관계 법령 (발췌)

어촌 · 어항법

- 제36조(어항관리규정) 광역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- 제42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(減免)할 수 있다.

현행 자치법규

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어촌·어항법」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·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「어촌·어항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7.3.2〉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어항시설"이라 함은 「어촌·어항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.
 - 2. "지정권자"라 함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.
 - 3. "관할어항"이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어항을 말한다.
 - 4. "이용단체"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·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(이하 "수산업협동조 합장"이라 한다)과 관할 어촌계장(이하 "어촌계장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 - 5. "이용자"라 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·사용하는 사람과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의 범위) 이 조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, 어항시설 점·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어항관리청의 의무) ①시장은 관할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, 기능유지 및 보전,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시장은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(이하 "이용자단체등" 이라 한다)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- 제5조(이용자단체등의 의무) "이용자단체등"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점·사용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어항시설 점·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

제6조(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) 시장은 관할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· 운영과 어항시설

- 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7조(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) ①시장은 어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〔별지 제 1호서식〕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어항시설의 안전점검)** ①시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 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[별지 제2호서식]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・유지하여야 한다.

제9조 〈삭제 2017.3.2〉

- 제10조(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·보수 등)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·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·변형 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손괴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
 - 2. 손괴·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(사진 첨부)
 - 3. 손괴·변형의 원인(손괴·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·변형사실 확인서 징구)
 - 4. 향후 복구대책 등
 -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・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1. "이용자단체등"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,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
 - 2.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(국가어항의 경우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)에게 통보하여 보수·보강하도록 조치
 - ③ "이용자단체등"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·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1조(유지·관리비용의 부담) ① "이용자단체등"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
 - 2.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
 - 3.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 청소에 소요되는 비용
 - 4.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
 - ②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·집행액, 당해 연도 예산액 등을 〔별지 제3호서식〕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(국가어항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어항시설의 재난예방) ① 〈삭제 2017.3.2〉

- ②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어항시설의 피해보고) ① "이용자단체등"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당해 어항의 지정권자 (국가어항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금지행위의 예방) ①시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[별지 제4호서식]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사람이 원상회복 이행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3.2〉
- 제15조(관리사용 상황의 조사) ①시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·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〔별지 제5호서식〕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
 - 2.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(손괴)상황
 - 3.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・처리 상황
 - 4. 어항시설 점·사용허가 현황
 -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 불이행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"이용자단체등"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· 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·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 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(국가어항의 경우 관할 지방해 양수산청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6조(환경보호 활동) 시장은 관할 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"이용자단체등"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, "이용자단체등"과 공동으로 어항 안에 유입된 부유물,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항 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,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권자(국

가어항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17조(폐유수거용기의 비치) ① "이용자단체등" 은 어항 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(이하 "폐유수거용기"라 한다)를 비치하고 어선으로 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,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·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"폐유수거용"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) 시장은 관할 국가어항 수역의 청항(淸巷)유지를 위하여 한 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·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 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·처리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

- 제19조(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) ①시장은 관할 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(이하 "어촌관광구역"이라 한다)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 - 2.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 · 어망을 건조하는 행위
 - 3. 유람선, 낚시어선, 요트,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
 - 4.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
 - 5.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
- 제20조(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) ① "이용자단체등" 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② "이용자단체등"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,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 - ③ "이용자단체등"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어촌관광구역의 점검) ①시장은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·운영되고, "이용자단체등"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어항시설 점·사용료 징수 등

- 제22조(어항시설의 점·사용 허가 검토 등)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·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〔별지 제7호서식〕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,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점·사용허가 면적의 제한) ① 법 제2조제5호 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·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·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.
 -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. 〈개정 2017.3.2〉
- 제24조(어항시설 점·사용 신고대상)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·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[별표 1]과 같다.
- 제25조(점·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) ①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·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·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〔별지 제8호〕 및 〔제9호서식〕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·사용 허가한 경우(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·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)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(국가어항의 경우 관할 지방 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6조(점·사용료의 산정) ①시장이 어항시설 점·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(이하 "사용료"라 한다)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계산한다. 다만, 법 제2조제5호 가목 (3)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「공유수면 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. 〈개정 2008.6.9, 2017.3.2〉
 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(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한한다)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관하여는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. 〈개정 2017.3.2, 2017.11.10〉③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은 〔별표 2〕와 같다.
- 제27조(사용료 납입고지 등) ①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·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·결정하고, 지체 없이 당해 어항시설 점·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, 초일을 산입한다.

-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이내
- 2.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 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
- ④사용료의 납입고지서, 사용료 수납방법·분납방법,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- 제28조(사용료의 납부) ①어항시설 점·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「해운법」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.
 - ③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·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.

제**29조** 〈삭제 2017.3.2〉

- 제30조(과오남 사용료 등의 처리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·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·사용기 간을 단축한 경우
 - 2.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·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·사용이 정지된 경우
 - 3.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
- 제31조(변상금의 징수) ①시장이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.
 - ② 〈삭제 2017.3.2〉

제 5 장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

- 제32조(협의회의 구성 등) ①시장은 법 제37조제1항, 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어항관리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 - 1. 위 원 장 : 어항관리부서의 장
 - 2. 부위원장 : 수산업협동조합장
 - 3. 위 원 : 관내 어촌계장(2인이내), 수산업협동조합 어항 담당상무, 어민대표(2인이내) 등 ②혐의회에는 회의 준비, 회의록의 작성 등 회무를 처리하고 혐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

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 도록 시 및 관할 구역내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3조 〈삭제 2017.3.2〉

제34조 〈삭제 2017.3.2〉

제35조 〈삭제 2017.3.2〉

제36조(수당)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20.9.29.〉

제 6 장 보 칙

제37조(보고 및 자료의 제출) 시장은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8조 〈삭제 2017.3.2〉

제3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